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개정
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
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보장함에 따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지급·결정통지 등 집행
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등(안 제125조의2)

「고용보험법」(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 개정
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
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신고의 수리,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나.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결정 및 지급 등(안 제125조의3)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결정 및 통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근로자의 구직급여 신청절차 등에 준하여 마련하고자
함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등(안 제125조의4)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
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 등에 준하여 마련하고자 함

라. 별지서식 제정(별지 제6호의2, 별지 제105호의3, 제107호의3 신설)

복수 문화예술 용역계약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 및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이 도입됨에 따라 ‘예술인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약서’를 제정하고자 함

마. 별지서식 개정(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3호, 제24호, 제74호, 제106호, 제108호, 제109호서식)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신고, 통지 등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적용과 예술인의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등 지급 등을 위해 현행 서식에 예술인·단기예술인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제125조의2부터 제125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25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① 영 제104조의5제3항·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3. 영 제104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
-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조항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 예술인”이라 한다)의 경우 영 제104조의5제3항 후단에 따라 노무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단기노무제공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

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4조의5제5항에 따라 예술인이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로자·예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전근 신고, 확인청구, 취득·상실 확인통지는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2항·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일용근로자”는 “단기예술인”으로,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의 사업주 및 영 제104조의5제10항에서 준용하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으로 한다.

제125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영 제104조의6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②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82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07조의2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61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61조”로, “영 제62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62조”로, “영 제63조 및 영 제66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63조 및 영 제66조”로, “법 제44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4조”로, “영 제64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64조”로, “영 제65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65조”로, “영 제66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로, “영 제71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1조”로, “영 제75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5조”로, “영 제76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6조”로, “법 제57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로, “영 제79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9조”로, “영 제80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80조”로, “법 제62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로, “영 제81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81조”로, “영 제82조”는 “영 제8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82조”로 한다.

제125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에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법 제77조의4제3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5호의3서식의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와 별지 제107호의3서식의 노무미제공 사실 확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유산·사산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출산증명서 1부
2. 수급기간 동안 취업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신청인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출산일 등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출산전후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104조제1호, 제122조, 제124조,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한다.

제125조의5(준용) 예술인의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135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는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로, “법 제89조”는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9조”로, “법 제99조”는 “법 제77

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9조”로, “영 제123조”는 “영 제1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23조”로, “영 제124조”는 “영 제1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24조”로, “법 제90조”는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0조”로, “영 제125조”는 “영 제1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25조”로, “법 제92조”는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2조”로, “영 제126조”는 “영 제1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26조”로, “영 제127조”는 “영 제1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27조”로, “영 제128조”는 “영 제1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28조”로, “영 제129조”는 “영 제1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29조”로, “영 제136조”는 “영 제1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36조”로, “영 제138조”는 “영 제1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38조”로, “영 제139조”는 “영 제1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39조”로, “영 제140조”는 “영 제1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40조”로, “영 제141조”는 “영 제1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41조” 한다.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3호, 제24호, 제74호, 제106호, 제108호, 제10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지 제6호의2, 제105호의3, 제10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12.10.부터 시행한다.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구 분	성명	국적	대 표 자 여 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보수월 액·월평균보수액) (원)	자격 취득일 (YYYY. 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체류 자격				자격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지역 연금 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 감면 부호	공무원·교직원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직종 부호	1주 소정 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작성) 부호 사유	
1			[]에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산재보험					[]에		
			[]아니오												[]아니오		
2			[]에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산재보험					[]에		
			[]아니오												[]아니오		
3			[]에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산재보험					[]에		
			[]아니오												[]아니오		
4			[]에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산재보험					[]에		
			[]아니오												[]아니오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 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유의사항

건강보험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연가입대상인 예술인은 고용보험 피부보험 자격취득신고서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 적용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 월 납부 희망"의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르거나,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임사노무제공 개시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예술인의 보수: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뺀 금액 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종사자 부호를 기재합니다). 6.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의 경우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를 '56', 사유를 '25'로 기재하고, 제4쪽 2. 예술인의 직종현황을 참고하여 직종부호를 기재합니다.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나목 및 제4호 가목, 나목, 다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건강보험

[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 ·벽지(사업장) 42. 섬 ·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보험

[직종 부호]

근로자의 경우 제4쪽의 별지[1.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기재하고,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의 경우 제4쪽의 별지[2. 예술인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	부과범위				대상종사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산재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25.예술인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 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복제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3. 음식 서비스직	
	21. 교육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4. 경호·경비직	
02. 경영·행정·사무직	22. 법률직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23. 사회복지·종교직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03. 금융·보험직	24. 경찰·소방·교도직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25. 군인	61. 영업·판매직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250 군인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3. 보건·의료직	62. 운전·운송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30. 보건·의료직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7. 건설·채굴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41. 예술·디자인·방송직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411 작가·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설치·정비·생산직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급형원 및 동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2. 예술인의 직종현황 (제4쪽)

창작 (44~45)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4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실연 (46~47)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6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기술지원 (48~49)	481 (기술지)원문화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제5쪽)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실 연월일 (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부호	초일취득· 당월상실자 납부여부	상실 부호	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보수 총액	전년도 보수총액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고용보험	고용보험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산재보험	산재보험
						희망 []									
						희망 []									
						희망 []									
						희망 []									

위와 같이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확인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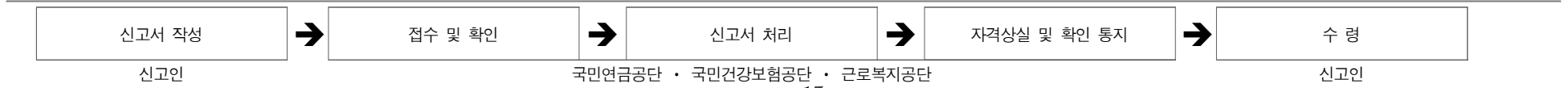
유의사항

국민연금	1.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앞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기재하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201x.xx.xx (고용보험) 201x.xx.xx (건강보험)	

작성방법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상실 연월일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국민연금의 경우 중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15·16·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중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국민연금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 무보수 대표이사 22. 근로자 제외 1.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생업 목적이 아닌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에 "√" 표시를 합니다.
건강보험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 제외 등)<13> 1.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⑰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⑯-1야간근로수당과 ⑳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업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2.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이직)사유 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또는 예술인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 또는 예술인 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해당 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보수(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 예술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사업장 명칭	사업장 전화번호	노무제공 개시일	계약 보수총액(총소득)
	사업장 소재지	사업주 성명	노무제공 종료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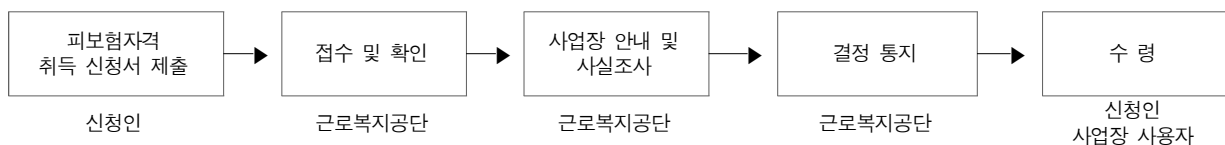
유의사항

- 취득 신청서는 둘 이상 사업장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기준으로 해당 소득 금액에서 계약 기간을 나누어 월(月)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 50만원 이상이 되어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예술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 고용보험료는 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 월평균소부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 "신청인" 항목에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장" 항목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노무제공기간(시작 연 월 일 ~ 종료 연 월 일), 소재지, 사업주 성명, 계약 보수총액(총소득)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년 월분)
[]고용보험 (단기에술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공통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같은 제출시에만 필히 기재하 며, 단기에술인의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사업장	소재지		공사명(유기사업명)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FAX번호			
	고용관리 책임자 (※건설업만 해당)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무내용) (근무지)[]본사 []해당 사업장(한정) []다른 사업장(한정)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국적	체류자격																				
전화번호(휴대전화)																					
직종 부호																					
근로일수 또는 노무제공일수 ("o" 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근로일수 또는 노무제공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일				
보수총액		원					원					원					원				
임금총액		원					원					원					원				
이직사유 코드																					

보험료부과구분(해당자만)

부호	사유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 신고	지급월	월					월					월					월				
	총지급액 (과세소득)	원					원					원					원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원천 징수 액	원					원					원					원				
	소득세 지방 소득세	원					원					원					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에	[]아니오				[]에	[]아니오				[]에	[]아니오				[]에	[]아니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104조의5제3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25조의2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제출(첨부)서류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기에술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1. 이 서식은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을 위한 서식으로 고용보험에만 적용됩니다.
2. 공통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노무제공일수를 적고, 보수지급일수, 보수총액(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신고 관련

1.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작성·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부실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01. 인사·노무 02. 회계·세무·경리 03. 경영·관리 04. 홍보·영업 05. 기술·기능 06. 기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근로자의 경우 ◆ 별지 [1.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기재하고, 단기에술인의 경우 별지 [2.예술인 직종현황]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4. 보수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근로자의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고(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됨), 단기에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일수가 됩니다.
* '보수'란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단기에술인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
5. "보수총액"은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고, 단기에술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임금총액"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한 금액을 적습니다.
7.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질병·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	○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2	○	x	x	x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용승소)
54	○	x	○	○	2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5	x	x	○	○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해위피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x	x	○	x	01.별정직·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25. 예술인
58	○	x	x	○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9.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기재합니다.
10.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1.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2.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항에 따른 금액)]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정수(1천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3.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별지] 1.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복제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01.관리직(임원·부서장)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판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011 의회·의회·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 교육직	53. 음식 서비스직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02. 경영·행정·사무직	22. 법률직	54. 경호·경비직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23. 사회복지·종교직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03. 금융·보험직	24. 경찰·소방·교도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6. 섬유·의복생산직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861 섬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25. 군인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7. 식품·가공·생산직
	250 군인	61. 영업·판매직	871 제과·제빵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보건·의료직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30. 보건·의료직	62. 운전·운송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제품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7. 건설·채굴직	89. 제조 단순직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70. 건설·채굴직	9. 농림어업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90. 농림어업직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 설치·정비·생산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1 작가·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방·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2. 예술인의 직종현황 (제3쪽)

창작 (44~45)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4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실연 (46~47)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6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기술지원 (48~49)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근로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4일
------	------	------------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번호:)															

사 업 장	④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⑤명 칭
	⑥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⑦대표자	

⑧신고사항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 확인(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만 해당함)
-------	---

[illegible]

「고공보험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4조의5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및 제12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이름
성명
성명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예술인은 문화예술융역 관련 계약서 등 노무제공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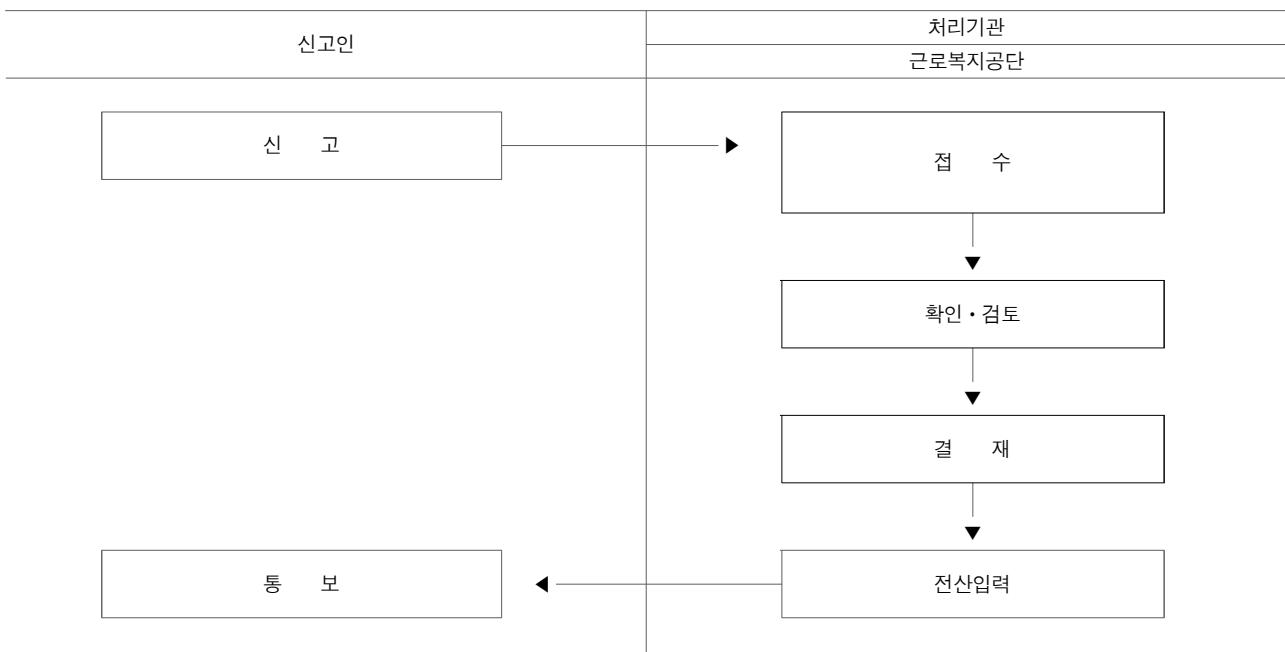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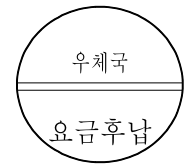
- ① ~ ③란은 신고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 ④ ~ ⑦란은 사업장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 ④란은 해당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관리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함).
- ⑤·⑥·⑦란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대표자를 정확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 ⑧란은 해당 신고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⑨란은 구체적인 신고사유 및 고용 또는 노무제공 관련 사실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적습니다. (예: 신고목적, 입·퇴사일, 담당업무, 퇴사사유, 월임금(월보수) 등). 특히 일용근로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목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와 단기예술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을 말합니다]은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근로·노무제공일수, 일평균근로·노무제공 시간, 지급받은 임금(보수)총액을 반드시 적습니다.
- ⑩란은 근로·노무제공일자 적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신고사유에 적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업주가 확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9호서식) 등]를 말하며 그 적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재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안>

수신자 :

년 월 (일용근로자·단기예수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사업장명칭		신고일			
일련 번호	피보험자		근로·노무제공 연월	근로·노무제공 일수	임금(보수)총액
	성명	생년월일			

본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명세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에서 **일용근로자·단기예수인고용정보** 목록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제77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문서번호			

178mm×279mm (전산용지 90g/㎡)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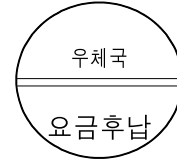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안>

■ 귀하는 입사/퇴직 등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상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수신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상실

피보험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격취득 (고용)	자격취득일 취득신고일 (가입신청일)	상실사유
자격상실 (퇴직)	상실연월일 상실신고일 (탈퇴신청일)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제77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제77조의3)

-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고용정책정보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FAX번호
문서번호	

178mm×279mm (전산용지 90g/㎡)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안>

■ 귀하의 일용근로내역이 다음과 같이 신고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

**년 월(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피 보 험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 로 내 용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연락처	현장명	근로·노무제공 연월	근로·노무제공 일수	임금(보수)총액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제77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내에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제77조의3)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포함)일 것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단기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3개월이상 유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 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고용정책정보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문서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사업장	전근(전보) 이전 사업장	전근(전보)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피 보험 자 [] 근로자 [] 예술인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근 일
	[] 고용	[] 산재			년 월 일
	[] 고용	[] 산재			년 월 일
	[] 고용	[] 산재			년 월 일
	[] 고용	[] 산재			년 월 일
	[] 고용	[] 산재			년 월 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4조의5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25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가 전근(전보)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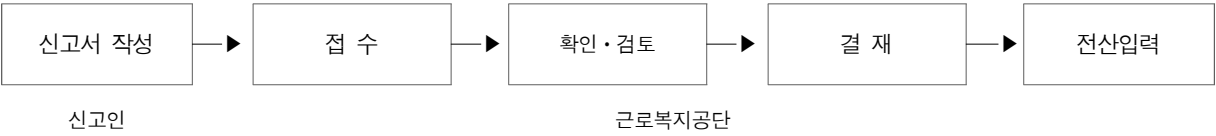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1. 이 신고서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작성합니다.
- 2. 전근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대 행기관	번호	명칭
--------------	----	----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	-----------------------------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 신고번호)	변경 내용			
			연월일 (YYYY.M MDD)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내용변경부호]: 1.성명 2.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3.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5.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
례·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고용보험만 해당) 6.휴직 종료일(고용
신재만 해당) 7.자격상실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별도 해당 기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증 수령지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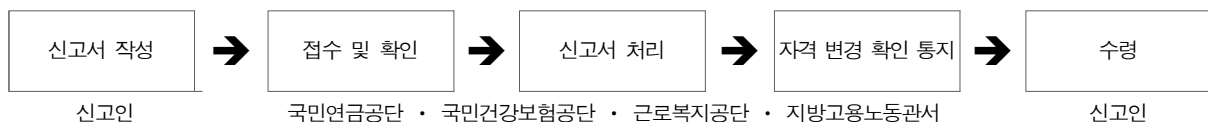
유의사항

1. 근무내용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용)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고용·산재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전근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 (☎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 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앞 쪽)

[illegible]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04조의5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5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이
유
인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노무제공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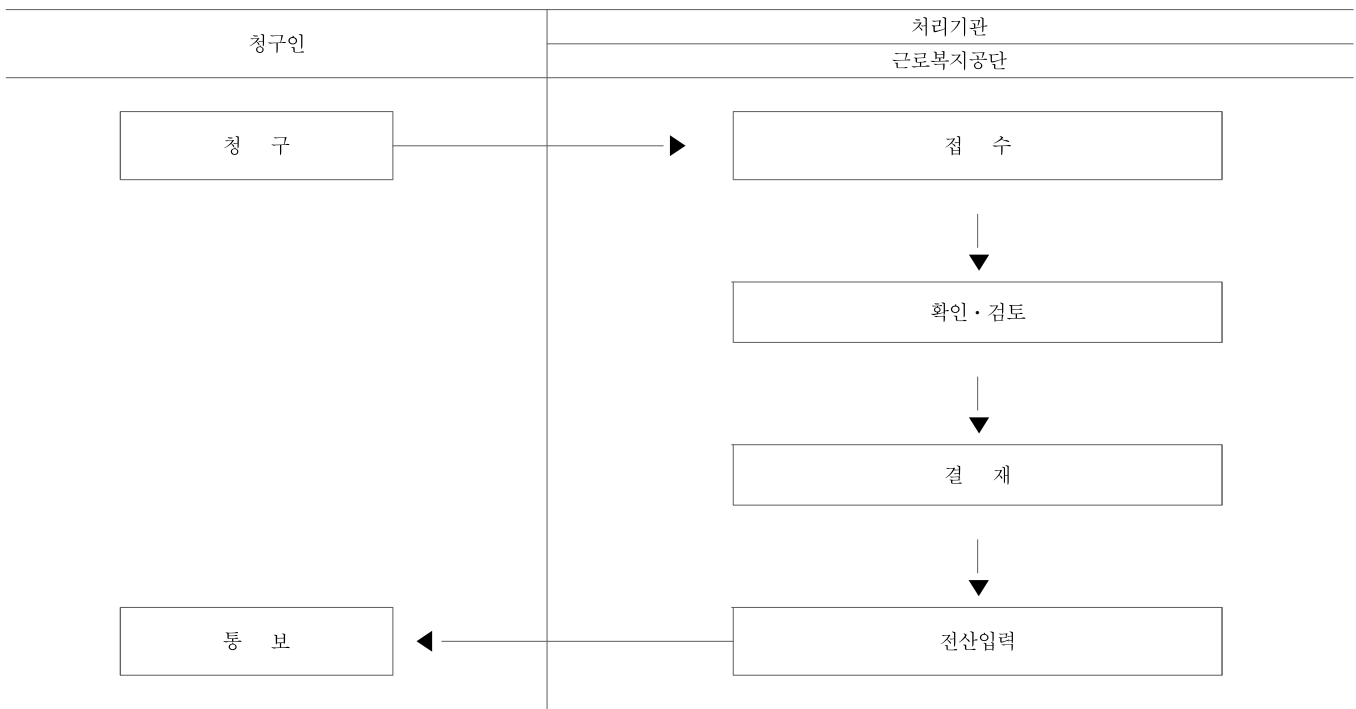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 ~ ⑤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⑥ ~ ⑪란은 사업장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⑫·⑬란은 확인청구의 내용 및 청구취지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4. ④란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된 일자(입사일) 또는 **노무제공을 개시한 날(노무제공 개시일)**을 적습니다.
 5. ⑤란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일자(퇴직일) 또는 **노무제공을 종료한 날(노무제공 종료일)**을 적습니다.
 6. ⑥란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관리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함).
 7. ⑪란은 확인청구 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8. ⑫란은 확인청구사유가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누락에 따른 것이면 1번란에 ○표 하고, 피보험자격 신고는 되어 있으나 피보험기간의 정정을 위한 경우에는 2번란에 ○표 하며, 피보험자격 신고사항 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3번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 구비서류는 확인청구사항에 적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말하며 그 적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자료가 불분명하여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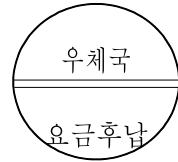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증



년 월분(일용근로자·단기예수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수신자:

① 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②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③ 보험사무대행기관명

④ 사업장명칭

일련 번호	피보험자		⑦ 근로·노무제공 일수	⑧ 임금(보수)총액
	⑤ 성명	⑥ 생년월일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104조의5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25조의2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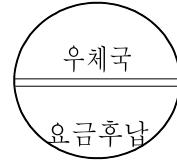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증



년 월분(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수신자:

피보험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피보험자 관리명세	④ 소속사업주	⑤ 근로·노무제공 사업장명	⑥ 근로·노무제공 일수	⑦ 임금(보수)총액
			일	
			일	
			일	
			일	
			일	
			일	
			일	

⑧ 확인사유 [] 자격취득·상실신고 누락 [] 피보험기간 정정 [] 신고사항 변경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104조의5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25조의2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작 인

공지사항

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⑤성명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실업급여 [] 지 급 [] 부지급 결정 통지서

수급 자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직일(폐업일)			

실업급여의 종류			
결 정 내 용	[] 지급 [] 부지급		
지급 결정액	원	신청일	
부지급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93조의2 및 제104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15조의5 및 제1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심사청구 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FAX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출산전후급여 []유산·사산급여

신청서(회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1. 신청인 정보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④ 임신기간 (유산·사산인 경우에만 작성)	1. 11주 이내 ☐	2. 12주~15주 ☐	3. 16주~21주 ☐
	4. 22주~27주 ☐	5. 28주 이상 ☐	

⑤출산일 (출산예정일, 유산·사산일)	년 월 일	⑥영아의 주민등록번호
		⑦다태아(多胎兒) 여부 [] 예 [] 아니오

⑧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연속하는 총 90일 중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30일 단 위로 기간을 설정)	첫 번째 30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일)
	두 번째 30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일)
	세 번째 30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일)
	네 번째 30일 (다태아인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 년 월 일(일)

⑨월평균보수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 이전 1년 간 보험료를 납입한 보수 기준)	원
--	---

2. 신청내용

⑩ 이번 회차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⑪ 급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확인사항

⑫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 지급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취업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습니까?

[]에 (기간: . 금액: 원) []아니오

[]에 (기간: . 금액: 원)

4. 서명 및 날인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영아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2. 지급기간 동안 취업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고, 유산·사산만 해당)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보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급여, 유산·사산급여는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에 의한 출산전후급여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1.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은 회차별(1, 2, 3, 4회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①, ②, ③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3. ④란은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임신기간을 해당 부분에 표시합니다(정상 분만의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4. ⑥란에는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2명 이상 출산한 경우에도 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태아, 유산·사산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⑥란에 111111-111111로 적습니다.
5. ⑦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에' 부분에 표시합니다
6. ⑧란에는 신청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출산일을 전후로 연속하여 90일이
어야 하며,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 ⑨란에는 신청인의 월평균 보수(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보수 기준)를 기재합니다.

※ 월평균보수: 출산일(유산·사산일) 이전 1년 간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보수/1년간의 총일수*30일

8. ⑩란에는 총 수급기간 중 이번 급여 신청에 해당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9. ⑪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7. ⑫란은 ⑧란에 적시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취업 또는 자영업 등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에' 부분에 표기하고 기간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아니오' 부분에 표기)

※ 출산전후 또는 유산·사산일 전후 90일 이내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취업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기간은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를 정상 지급합니다.

처리절차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 출산전후급여등의

[] 지급
[]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가부여기간 (급여지급기간)		신청일
결정내용	[] 지급(금액:)	
	- 급여산출명세:	
	[] 부지급(부지급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지급 안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급여등)은 귀하가 신청 시 적으신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

심사청구 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급여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한 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
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노무 미제공 사실 확약서

- ① 아래 확약인은 ‘출산전후급여등’과 관련하여 급여 신청기간(20 . . . ~ 20 . . .)에 노무
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위 급여 신청기간 중 취업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 미제공으로 인정됩니다.

- ② 아래 확약인은 ‘출산전후급여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급여 환수 및 추가징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1월 1일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사업주	④회사명			
	⑤소재지			
⑥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사유				
부 정 수 급	⑦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⑧추가 징수금액			
	⑨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⑩납부할 금액(⑦+⑧+⑨)				
⑪ 납부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회)		

귀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급여등)은 「고용보험법」 제77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7)에 따라 이를 지급제한(반환명령,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위 납부할 금액을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 출산전후급여등의

과오급 반환결정 통지서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사업주	④회사명			
	⑤소재지			
⑥과오급 결정사유				
⑦과오급으로 인한 반환 금액				
⑧납부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회)		

위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급여등) 수급액은 「고용보험법」 제62조 및 제77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7)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u> <u>대한 고용보험 특례</u> <u>제125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u> <u>상실신고 등) ① 영 제104조의5</u> <u>제3항·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u> <u>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u> <u>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u> <u>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u> <u>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u> <u>하여야 한다.</u> <u>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u> <u>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u> <u>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u> <u>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u> <u>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u> <u>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u> <u>3. 영 제104조의5제2항 단서에</u> <u>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u> <u>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상</u> <u>실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u> <u>의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u> <u>험자격 취득신청서</u> <u>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u>

서조항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의 경우 영 제104조의5제3항 후단에 따라 노무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단기노무제공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4조의5제5항에 따라 예술인이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로자·예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전근 신고, 확인청구, 취득·상실 확인통지는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2항·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일

<신 설>

용근로자”는 “단기예술인”으로,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
주·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
하는 법 제15조제1항의 사업주
및 영 제104조의5제10항에서 준
용하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으로 한다.

제125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영 제104조
의6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여부
에 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74
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부지
급)결정통지서로 한다.

②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
여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82조
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99
조부터 제101조까지, 제103조부
터 제107조까지, 제107조의2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61조”는 “영 제104조의6
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61조”
로, “영 제62조”는 “영 제104조
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62
조”로, “영 제63조 및 영 제66
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63조 및 영 제66조로, “법 제44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4조”로, “영 제64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64조”로, “영 제65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65조”로, “영 제66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로, “영 제71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1조”로, “영 제75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5조”로, “영 제76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6조”로, “법 제57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로, “영 제79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9조”로, “영 제80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80조”로, “법 제62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로, “영 제81조”는 “영 제10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신 설>

제81조”로, “영 제82조”는 “영 제84조의6제8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82조”로 한다.

제125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에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 방법 등) ① 법 제77조의4제3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5호의3서식의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와 별지 제107호의3서식의 노무미제공 사실 확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유산·사산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출산증명서 1부
2. 수급기간 동안 취업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을 말한다)의 진단서(임신기
간이 적혀있어야 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신청인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
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
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신청은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출산일 등
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신청
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대
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출산전후급여의 신
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10
4조제1호, 제122조, 제124조, 제
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
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한
다.

<신 설>

제125조의5(준용) 예술인의 구직
급여·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
는 제135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는 “법 제77조의5제
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
로, “법 제89조”는 “법 제77조의
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9
조”로, “법 제99조”는 “법 제77
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
99조”로, “영 제123조”는 “영 제
1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2
3조”로, “영 제124조”는 “영 제1
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24
조”로, “법 제90조”는 “법 제77
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
90조”로, “영 제125조”는 “영 제
1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2
5조”로, “법 제92조”는 “법 제77
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
92조”로, “영 제126조”는 “영 제
1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2
6조”로, “영 제127조”는 “영 제1
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27
조”로, “영 제128조”는 “영 제10
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28

조”로, “영 제129조”는 “영 제1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29조”로, “영 제136조”는 “영 제1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36조”로, “영 제138조”는 “영 제1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38조”로, “영 제139조”는 “영 제1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39조”로, “영 제140조”는 “영 제1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40조”로, “영 제141조”는 “영 제104조의8에서 준용하는 영 제141조” 한다.